

「구미시 농업인 직거래장터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
전부개정조례안」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: 2023년 6월 27일

나. 제 출 자: 구미시장

다. 회부일자: 2023년 6월 28일

라. 상정일자: 2023년 7월 6일

제269회 구미시의회 임시회

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 설명의 요지

가. 제안 설명자: 선산출장소장 김 언 태

나. 제안이유

- 농산물에 대한 지역연계 소비의 강화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구미시 농특산물의 이용촉진 및 직거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재정비하여 그 근거를 마련하고 사업의 효율성을 높여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소비자의 이익보호에 기여하고자 함.

다. 주요내용

- 목적 및 정의(안 제1조~제2조)
- 농특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 및 판매촉진 등(안 제3조~제4조)
- 농특산물 판매촉진 홍보(안 제5조)
 - 농특산물 판매촉진을 위한 홍보사업 추진 시 민간위탁 운영 근거 마련
- 직거래장터 개설·운영 및 위원회 설치 등(안 제6조~제18조)
 - 직거래장터 위치 및 사업내용(안 제6조~제7조)
 - 직거래장터 운영위원회 설치, 구성, 기능, 회의, 운영(안 제8조~제12조)
 - 직거래장터 민간위탁 운영에 따른 의무 및 관리 사항(안 제13조~18조)

라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
 - 「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
 -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
-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
- 합 의 : 정책기획과, 예산재정과, 감사담당관과 합의되었음
- 기 타 : 구미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김 용 덕

○ 본 조례안은

- 상위법에 의거하여 구미시 농업인 직거래장터의 운영과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 전부개정조례안으로,

○ 검토 결과,

- 당초 조례는 농업인 직거래장터의 운영에 한정하여 운영하고 있었으나 농특산물 이용촉진 및 활성화를 위한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보다 촘촘한 홍보사업 추진으로 농업인의 소득증대 및 소비자의 이익증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조례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

5. 토론요지: 생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: 없음

7. 심사결과: 수정가결